

국제 ODA 동향

(2006. 7)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분석

[Page]

- [수출금융과 유상차관의 연계 필요성 및 사례](#) [2]
 - ◆ 공적수출신용과 공적개발원조의 연계 필요성과 국내외 연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상차관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주요토픽

-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시사점](#) [15]
 - ◆ 무역 및 원조 규모 확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한 국제원조사회의 반응과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고찰

단 신

- [제57차 OECD DAC 통계회의의 주요 내용](#) [27]
 - ◆ 2006년 6월 개최된 OECD DAC의 통계작업반회의의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CGI Member의 원조 공약내용](#) [31]
 - ◆ 2006년 6월 인니 원조공여국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원조공여국의 원조약정 내용과 인니 정부의 반응
- [국제원조에 대한 캐나다 CCIC의 비판적 분석](#) [35]
 - ◆ 최근 캐나다 시민단체가 발간한 '2006년 원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자 료

- [세계은행 및 OECD의 2006년도 국가분류 현황](#) [38]
 - ◆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세계은행 및 OECD의 국가분류 현황
- [프랑스 AFD의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 [42]
 - ◆ 프랑스 양자간 원조의 주요 실행기관인 AFD의 2005년 업무실적

이슈분석

수출신용과 유상차관의 연계 필요성 및 사례

I. 수출신용과 공적개발원조(ODA)

1. 수출신용¹⁾과 ODA의 연계

가.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의 의의

- 공적수출신용은 정부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적지원 (official support)의 한 형태
 - 공적수출신용은 자국의 수출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상업금융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제공되는 대출·보증·보험을 통칭
-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은 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 (Official 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말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OECD 30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및 아일랜드를 제외한 28개국 포함)이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1919년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국(ECGD)을 선두로 선진 각국들의 수출신용기관이 설립되어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음
 -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동유럽의 체제전환국들도 경제개발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수출신용기관을 설립함
 - 수출신용기관은 대외거래 관련 위험의 최종부담자로서 자본재와 첨단기술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수출진흥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국익을 실현하고 있음

1) 수출신용은 기본적으로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으로 공여주체의 성격에 따라 크게 '공적 수출신용'(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과 '민간 수출신용'(주로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제공)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공적 수출신용'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함

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의의

- 공적개발원조(ODA)는 '공여국의 공공기관이나 이들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조건으로 공여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
 - 공여주체 : 공여국의 공공기관 및 이의 집행기관
 - 공여대상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인정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
 - 공여목적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리증진
 - 공여조건 : 상업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증여율이 25% 이상)
- 원조공여국들은 자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철학, ODA 규모 등에 따라 각각 고유한 원조 체제를 가지고 있음
 - 선진국의 원조 체제는 국가마다 고유한 원조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양자간 원조의 분담방식을 기준으로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유무상 원조에 다수의 정부부처 또는 원조기관이 참여하는 '분리형'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 등을 들 수 있음
 - 유무상 원조를 단일 정부부처 또는 원조기관이 주도하는 '통합형'에는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을 들 수 있음

다. 공적수출신용과 ODA의 연계

- 공적수출신용과 공적개발원조는 양자의 목적이나 공여조건 등이 서로 다르나, 공여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목적이나 업무내용에서 유사성이 높아 실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 즉, 양자는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지원으로서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진흥 등 경제적 목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

- 이에 따라, 원조의 경제적 목적을 중시하는 국가의 경우는 수출신용기관이 ODA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수출진흥과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수출신용기관이 유상차관을 통합·운용하는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중국, 미국 등을 들 수 있음

2. 수출신용기관이 유상차관을 취급하는 이유

가. 지원 목적의 유사성

- 공적수출신용과 유상차관(특히, 타이드의 경우)은 지원목적이 공여국의 경제적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
- 양자는 주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인 동시에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진흥 등 경제적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유상차관의 자국 수출진흥 기능 등 공적수출신용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인해 OECD는 '공적수출신용협약'에서 타이드 원조의 무분별한 운용을 엄격히 규제
- 이러한 경제적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ECA와 유상차관 공여기관이 없는 일부 선진국의 경우, 상업금융과 무상원조를 결합하여 유상차관 또는 수출신용 공여기능을 부여
 - 즉, 상업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타이드 유상차관 조건(또는 공적수출신용조건)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상업금리와 원조금리(또는 공적수출신용 금리)와의 차이를 무상원조로 보전

나. 업무내용의 유사성

- ECA가 취급하는 공적수출신용과 유상차관은 기본적으로 자금협력(financial cooperation)이라는 점에서 유사
- 양자는 특정 프로젝트의 실시예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자금의 공여 및 원리금 회수 등 자금협력을 수반

- 반면, 무상원조는 주로 긴급구호 등 인도적 목적에 따른 원조와 특정 개발 프로젝트의 실시에도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공여하기 보다는 전문가 파견, 기술전수 등 기술협력을 지원
- 또한, 수출신용과 유상차관은 원리금 회수를 위한 **상환가능성 분석**과 **국별신용도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사
 - 양자는 궁극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금융(financing)으로서 상환가능성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채권회수기반이 해외에 존재하므로 국별신용도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그리고 양자는 주요 지원분야도 **SOC 등 개발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 분석, 관련 산업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심사기법도 유사

3. 수출신용기관이 ODA를 취급하는 주요 사례

가. 독일 KfW

- 독일의 경우 유·무상 원조형태에 관계없이 자금협력은 중장기 수출금융을 전담하는 **독일부흥금융금고(KfW)**에서 총괄함으로써 자금협력의 효과성을 제고
 - ※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은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음
 - **자금협력(financial cooperation)** : 특정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공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유상차관의 지원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무상지원도 실시
 -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개도국의 개발자금을 직접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험 등 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인력교류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통상 무상원조로 지원
- KfW는 **이국간 자금협력 전문기관**으로서 프로젝트의 성격, 국별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출신용, 유상차관, 무상원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며, 필요시 이들 자금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
- 한편, 기술협력은 외교적·인도적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기관인 기술협력공사(GTZ)에서 운용

나. 프랑스 Natexis Banques Populaires

- 프랑스는 수출신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없어 공적수출신용 업무를 민간상업은행인 **Natexis 은행**에 위탁하여 취급함과 아울러,
 - 수출신용과 지원목적, 사업내용이 유사한 **이국간 타이드 원조** 업무를 Natexis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양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
- Natexis 은행은 주로 **이차보전**을 통해 수출금융과 타이드 원조를 공여
 - 프랑스 무역보험회사인 Coface의 보험을 기반으로 상업금융기관이 공적수출신용 조건으로 제공하면 Natexis 은행은 통상적인 상업금리와 공적수출신용 금리의 차이를 보전
 - 중요거래 등 필요한 경우 보다 양허적인 조건의 타이드 원조를 공여

다. 스페인 ICO(Institute of Official Credit)

- 스페인은 공적수출신용기관에 해당하는 ICO가 유상차관 재원인 **개발 원조기금(FAD)**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출진흥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스페인은 수출진흥 등 원조의 경제적 목적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FAD를 원칙적으로 타이드로만 운영하며 필요시 공적수출신용과의 혼합신용 형태로 지원
 - 이와 같은 스페인의 원조정책은 상대적으로 늦게 원조공여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로서 짧은 기간에 원조를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 획득이 용이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유상원조를 적극 활용한데 기인

라. 덴마크 DANIDA

- 공적수출신용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ECA)이 없고 유상원조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상업자금과 무상원조를 결합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이 ECA로서의 기능과 유상원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유도**

- 외무부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의 무상원조자금과 민간 상업금융자금을 결합하여 **타이드 유상차관** 또는 **공적수출신용 조건**으로 지원하는 **혼합신용(Mixed Credit)**을 적극 활용
- 민간금융기관의 대외위험은 수출보험공사에 해당하는 **EKF**가 인수하며, EKF가 부담하는 통상 수준이상의 대외위험 프리미엄, 상업금리와 타이드 유상원조(또는 공적수출신용)간의 금리차이 등은 **DANIDA**가 무상원조로 보전
 - 이와 같은 혼합신용은 형식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덴마크 민간부문의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금융** 제도로서 기능
- 덴마크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과는 달리 과거 식민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발원조를 공여시 **호혜성(reciprocity)**을 중시하고 덴마크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성 등 **경제적 이익**을 강조

마. 중국 China EXIM

- 중국정부는 유상차관 집행 업무를 당초 중국신탁투자공사에서 취급토록 하였으나, 동 원조자금을 수출진흥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1995년 중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
 - 이는 1994년 중국 수은 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임
- 중국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과 유상차관을 적절히 활용하여 해외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중점 지원
 - 중국 수은은 양자를 결합하여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 해외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시멘트, 농업기계, 도로건설, 수로건설 등을 중점 지원
 - 최근에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의 자원확보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향

바. 미국 EXIM

- US EXIM은 1978년부터 자국기업의 경쟁력 방어를 위해 경쟁국의 혼합신용 또는 타이드 원조 등 **양허성 자금 지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이드 원조** 업무를 실시

- 미국은 통상적으로 유상원조를 취급하지 않으나 상대국이 유상원조를 자국의 수출진흥 목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응(matching)하기 위해 상대국과 동일한 조건 또는 더 양호한 조건의 원조자금을 공여함으로써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보호
- US EXIM은 외국정부의 타이드 원조에 대해 매칭하기 위한 목적의 타이드 원조 공여를 위해 TACPF(Tied Aid Capital Projects Fund)를 운용 중

II. 우리나라의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

1.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 필요성 및 효과

- 우리나라도 수출신용과 유상차관의 연계를 통해 국제경쟁입찰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
 -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 시장이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 바뀔에 따라 장기·저리의 금융조건이 수주의 핵심요소로 작용
 - 발전, 송배전, 철도, 통신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국내 산업연관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각국이 수출신용 외에 원조자금을 동원하여 자국기업의 수주를 지원
 - 우리나라의 최대시장인 아시아 지역의 경우 높은 성장성과 시장성으로 인해 선진국의 원조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중국의 가세로 이러한 원조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신용과 EDCF의 연계가 긴요
- 또한, 수출신용과의 연계를 통해 원조자금인 EDCF의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EDCF는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매우 한정된 재원이며, 수출신용에 비해 매우 양호한 금융으로서 최소의 지원을 통해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필요시 EDCF와 수출신용이 각각 일정부분을 상호 분담하여 지원함으로써 EDCF 자금의 가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출신용과 유상차관(EDCF)의 연계 사례

가. 직접적인 연계사례 (혼합신용)

□ 터키 경전철 전동차 구매사업(2006.3)

- 터키 정부가 앙카라 등 수도권 지역에 신규 전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스페인이 자국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에 유상원조를 혼합한 금융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 우리나라는 당초 수출신용을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우리기업의 금융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EDCF(50백만불)와 수출신용(10백만불)의 혼합신용을** 제시하여 사업을 수주 ⇒ 우리기업의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계
 - 입찰마감까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속한 혼합신용 공여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신용을 전담하는 수출입은행에서 EDCF를 통합 운용함에 따라 사업타당성 및 국별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했고 **수출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했기 때문

□ 스리랑카 상수도 개발사업(2001.6)

- 스리랑카 골(Galle) 광역시의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우리나라는 파이프 등 수출효과가 양호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신용(6.7백만불)**으로 지원하고, 정수장건설 등 시공부문은 **EDCF(19.5백만불)**로 지원하여 역할을 분담 ⇒ EDCF 자금의 가용성 제고를 위한 연계
- 또한, 본건은 EDCF는 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과의 혼합신용을 제안하여 본건의 사업 수주를 성사한 경우
 - 수출신용과의 연계를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EDCF 재원 소요를 최소화

- 본건 사업에 이어 스리랑카 정부는 상수도 분배관 매설사업을 추가로 발주하였고 EDCF는 이를 재차 지원(15.5백만불)하여 우리기업이 신규 사업을 수주(2005.11)

나. 간접적인 연계 사례(EDCF에 의한 시장개척 후 수출신용 지원)

□ 파나마 의료보건 현대화사업(2000.11)

- 파나마 정부의 의료보건 현대화사업에 대한 EDCF 지원(2천만불)으로 우리나라 MRI, CT, 초음파진단기, X-Ray, 고압멸균기, 수술용 칼 등 국산 의료기자재의 우수성이 알려지게 됨
-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국내기업에 2차(6백만불) 및 3차(8백만불)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우리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 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주
 - 이와 같은 후속 수주는 EDCF 지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파나마 시장에 한국산 의료기자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결정적

□ 가나 정유제품 저장소 건설사업(1992.7)

- 가나 정부의 정유저장소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공한 EDCF 차관(0.13억불)이 총 3.3억불의 대규모 정유공장 증설사업(1차, 2차) 수주로 연계
 - EDCF로 지원된 정유제품저장소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한국기업이 가나 정부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가나의 유일한 정유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을 수출신용 공여를 조건으로 한국기업에 발주
- 정유공장 증설사업은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우리기업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EDCF 지원을 통해 양국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한국기업의 기술력이 소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Ⅲ. 시사점 및 향후 전망

1. 시사점

- 우리나라의 ODA, 특히 **유상차관**은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부족한 자원의 확보 등 경제적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임
- 수출신용과 ODA의 연계에서 볼 수 있듯이, ODA는 본질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며 많은 선진 공여국들은 ODA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자국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서 개도국 시장개척, 무역 및 투자진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외 원조환경을 고려할 때 ODA는 국가의 이익, 특히 경제적 목적 달성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
 -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양자간 원조는 지나친 시혜적 관점 또는 일방적인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호보완적 경제협력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파트너쉽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나,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른 원조배경, 낮은 1인당 국민소득, 높은 대외의존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원조수요,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수준 등을 감안할 때 ODA의 경제적 목적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수출신용뿐만 아니라 ODA도 수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당위성이 높음
- 공적개발원조와 수출신용을 더욱 조직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양허성 수출신용제도²⁾’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양허성 수출신용제도는 국제경쟁입찰에서 자국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신용과 유·무상원조의 결합금융패키지(Associated financing package)로 주요 선진국이 운용 중

- 현행 EDCF와 수출자금의 협조융자 방식에 의한 연계는 부족한 개발원조재원의 가용성을 높이는 효과는 갖고 있으나 지원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만함

2. 향후 전망

- 우리나라 유상차관(EDCF)은 원조의 경제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신용과의 연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
 - EDCF는 최근 **외화표시차관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신용과의 연계가 더욱 용이해졌으므로 양자간의 연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
 - EDCF는 기존의 원화표시차관 방식에서 벗어나 외화표시차관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외화로 표시되는 수출신용과의 연계·혼합이 용이해짐에 따라 향후 연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EDCF와 수출신용의 연계가 유망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
 - 나아가,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양허성 수출신용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신용과 유상차관의 연계는 더욱 조직화될 전망
- 한편, **우리나라 유상차관은 국제사회의 언타이드화 추세 속에서도 수출신용과의 연계 등 경제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당분간 타이드로 운용될 전망**
 - 국제 원조사회는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ODA의 언타이드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언타이드 차관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원조의 경제적 기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감안할 때 대외원조의 기초를 언타이드로 전환할 경우 수주율 급감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신용과의 연계 등 원조의 경제적 기능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언타이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상차관의 타이드 기초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타이드 차관을 전면 언타이드화 하기는 시기적으로 미성숙
- 그러나, 국제원조사회의 언타이드화 추세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나마 언타이드 차관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 기술협력과 연계되어 수주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언타이드 차관의 점진적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함

붙임 : 수출금융과 ODA를 동시에 취급하는 기관

작 성 : 김 영 석, kimys68@koreaexim.go.kr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붙임)

수출금융과 ODA를 동시에 취급하는 기관

구분	기관명	기능	비고
일본	JBIC	- '96년 JEXIM과 유상원조자금인 OECF를 통합하여 동시 수행	- 정부의 공적금융기관 구조 조정계획에 따라 '08년 OECF 기능을 JICA와 통합할 예정
독일	KfW	- '50년 중장기 수출금융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58년 이국간 개발원조업무를 추가 - BMZ의 개발원조 예산에 KfW가 자체신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혼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프랑스	Natexis Banque Populaires	-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공적수출금융을 지원 - 정부의 타이드 원조 업무를 대행	-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두 가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스페인	ICO	- 상업은행의 중장기 수출금융에 대한 이차보전 - 타이드 유상차관자금인 FAD를 관리	- 정부를 대리하여 차관사업 발굴 및 차관계약 체결 등 수행
미국	USEXIM	- 평소에는 ODA를 공여하지 않으나, 다른 나라의 Tied 원조에 대해서 매칭(matching)을 실시	
중국	China EXIM	- '94년 설립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양허성 차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95. 4월)	- 수출신용과 양허성 차관업무의 통합수행으로 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덴마크	DANIDA	- 상업금융과 무상원조를 혼합하여 타이드 유상원조(또는 수출신용)와 동일한 효과 발생 - 상업금융기관의 금리차 및 수출보험공사격인 EKF의 대외위험 프리미엄을 무상원조로 보전	- 덴마크의 혼합신용은 수출금융이면서 동시에 개발원조 - 별도의 수출금융기관을 두지 않고 수출보험 부보를 기반으로 상업금융기관이 수출신용기관 및 유상원조기관의 역할을 수행

목차보기

주요토픽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시사점

【요약】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등 OECD DAC 非회원국은 무역 및 원조 규모가 확대되면서 신흥원조공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신흥원조공여국을 바라보는 국제원조사회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해 있는 상황
- OECD와 세계은행은 신흥원조공여국을 국제원조사회의 틀 안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1.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s)³⁾의 급부상

- 최근 상당수의 DAC 非회원국들은 무역 및 수출신용 규모 확대와 더불어 원조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흥원조공여국으로 급부상함
- 한국, 터키,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아이슬란드 등 Non-DAC OECD 회원국의 ODA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해 일부 DAC 회원국의 규모를 초과
 - 한국과 터키는 ODA 절대금액 기준으로, 아이슬란드와 체코는 ODA/GNI 비율 기준으로 일부 DAC 회원국을 초과
- 중국, 브라질, 인도는 중장기 공적수출신용 규모가 세계 10위안에 위치할 만큼 성장하였고 ODA 공여활동 또한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현재 무역규모가 세계 3위이며 2010년에는 세계 무역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3) 신흥원조공여국 중 상당수의 국가들, 예컨대 러시아, 중국, 인도, 쿠웨이트 등은 사실 오래전부터 원조공여국으로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신흥(emerg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DAC 비회원국(non-DAC donors)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신흥원조공여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한편, 중국·인도 등 신흥공여국은 주로 유상원조를 활용,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척, 자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⁴⁾

□ 이러한 신흥원조공여국의 급부상은 국제원조사회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바, 국제기구들은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OECD, 세계은행, IMF 등 개도국으로의 공적자금 흐름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들은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2. 신흥원조공여국의 분류 및 특징

□ 신흥원조공여국은 OECD 및 DAC 가입 여부, 경제적 또는 지역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크게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신흥원조공여국의 분류

구 분	특 징	소 속 국가
I 그룹	Non-DAC OECD 회원국	한국, 터키, 헝가리, 체코 등
II 그룹	유럽국가 중 OECD 非회원국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
III 그룹	중동 및 OPEC 회원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IV 그룹	OECD 非회원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① I 그룹 : Non-DAC OECD 회원국

○ 한국, 터키, 멕시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아이슬란드 등 OECD 회원국이나 DAC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로 이들 국가의 ODA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함

- '04년 기준 절대규모 기준으로 한국(423백만불)과 터키(339백만불)는 DAC 회원국인 뉴질랜드(212백만불)와 룩셈부르크(236백만불)를 초과

- '04년 ODA/GNI 비율은 아이슬란드(0.18%), 체코(0.11%)가 매우 높은 수준

○ 이들 국가들의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04년 10억불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억불 수준으로 2배 확대될 전망

4) 중국은 아프리카 자원부국인 앙골라나이지리아에 각각 20억불의 차관한도 설정하였고, 인도는 향후 대아프리카 연간 지원액을 3-4억불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EU회원국(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은 2006년 5월 ODA/GNI 비율을 2010년까지 0.17%, 2015년까지는 0.33%로 확대하기로 약정
- 한국은 2010년까지 **ODA 10억불** 달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폴란드와 터키는 2010년 DAC 가입을 계획

② II그룹 : 유럽국가 중 OECD 非회원국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OECD 非회원국**이나 **EU의 신규 회원국**인 나라들이 이에 해당
- 이들 국가들은 EU 가입에 따라 GNI 대비 ODA 확대할 계획
 - 2010년까지 0.17%, 2015년까지 0.33%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

③ III그룹 : 중동 및 OPEC 회원국

- **회교도 지역과 아프리카에 위치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해당
- 이들 국가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의를, 문서공유 등 단단한 결속력을 과시하며, 대부분의 ODA를 언타이드 방식으로 공여
 - 한편, 원조형태에 있어서는 개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차관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ODA 공여 여력이 상승하였으나 급격한 ODA규모 확대는 기대하기가 어려움
 - 이들 국가는 보수적인 ODA 공여행태에 따라 최근 ODA규모가 20~30억불 수준이며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80년대에 비해 저조한 수준)

④ IV그룹 : OECD 非회원국

-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칠레, 남아공 등으로 **거대신흥시장(BRICs)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국가별 지원 특징
 -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으로 양자간 및 다자간(OPEC Fund) 방식으로 ODA를 공여해 오고 있으며, 카리브해 연안 국가 및 남미국가를 집중 지원

- 브라질은 Lusophone 공동시장 내에서 이국간 및 다국간 ODA를 활발히 공여
- 러시아는 구소련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주요 ODA 공여국이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 중국과 인도는 주로 유상원조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척과 자원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3. 중국과 인도의 원조 동향

- 상기 4개 그룹 중 국제원조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IV그룹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IV그룹은 현재의 원조 공여행태와 원조규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조사회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IV그룹 중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신흥원조공여국은 중국과 인도로 양국은 오래전부터 ODA 공여국임과 동시에, 더 많은 규모의 ODA를 수혜받는 수원국이기도 함

중국과 인도에 대한 ODA 지원 규모(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다자간 원조						
중국	460	346	231	162	39	n/a
인도	847	824	680	555	667	n/a
양자간 원조						
중국	1,256	1,086	1,212	1,140	1,585	n/a
인도	650	904	785	384	21	n/a

- 수원국으로서의 중국과 인도를 보면, 중국과 인도에 대한 ODA 자금 흐름(순지출 기준)은 서로 상반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에 대한 다자간 ODA를 보면 인도에 대한 지원이 우세
 - 중국은 IDA 졸업국으로서 대규모 원금상환을 단행하여 중국에 대한 다자간 ODA는 거의 "0"에 근접한 반면, 인도는 아직 빈곤국으로서 연간 6억불 정도의 다자간 ODA를 제공받고 있음

- 중국과 인도에 대한 양자간 ODA를 보면 중국에 대한 지원이 우세
 - 중국에 대한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순지출 기준)는 2004년에 크게 증가하여 16억 달러(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에 육박한 반면, 인도에 대한 양자간 ODA는 계속 줄어들어 2004년에는 21백만 달러 수준에 그침
 - 그러나, 중국의 최대 원조공여국인 일본이 2008년부터 중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중단하기로 하고, 유상차관의 대부분을 상환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방침이 잘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인도에 대한 양자간 원조가 우세해 질 전망
 - 다만, 양자간 차관에 대한 인도의 지나친 선별적 태도를 감안할 때, 인도에 대한 양자간 ODA가 중국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음
- 한편, 중국과 인도는 원조공여국으로서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매우 공격적인 ODA 확대계획을 수립
- 중국은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약속
 - 39개 최빈국(LDC)중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
 - HIPC 및 LDC에 대한 ODA 증액, 향후 2년 내에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HIPC 국가의 2004년말 현재 연체 중인 차관을 탕감
 - 향후 3년 동안 개도국의 인프라개발 및 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해 양허성 차관 및 수출신용을 합계하여 총 100억불 지원(이중 얼마가 ODA인지는 불명확)
 - 향후 3년간 말라리아 약 및 기타 의약품 공급의 확대를 통해 의료시설 개선과 의료인력의 훈련을 지원
 - 개도국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3년간 30,000명의 인력에 대한 연수 실시
- 인도 역시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교육지원 및 기술협력과 이웃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원조수단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인도 정부의 개발계획(Indian Development Initiative)에 따르면 국제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공여할 예정(단, 차관금액의 최소 85%는 타이드 조건으로 운용)

- 아프리카에 대한 연간 지원금액을 3~4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인 바, 이는 '04/'05년의 10배에 해당
- NEPAD⁵⁾하의 아프리카 지역 개발프로그램에는 2억불을 공여
- TEAM-9⁶⁾ 기금으로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수출입은행 신용한도를 5억불 제공

4.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

가. 기대되는 점

□ ODA 재원의 양적 확대에 기여

- Non-DAC OECD 국가는 2010까지 ODA를 2배로 확대하고, 새로 EU에 가입한 국가들은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33%로 확대하기로 약속
- 한편, 중국과 인도는 경제력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증진 등을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ODA를 확대하는 추세
- 이러한 신흥원조공여국의 ODA 확대는 MDG 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의 확충과 개도국의 빈곤해소에 기여

□ ODA 공여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개도국의 협력기회 확대

- 신흥원조공여국은 과거 ODA 수혜경험이 있는 국가이므로 수원국은 OECD DAC 중심의 공여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폭 넓은 협력 대상국의 선택과 다양한 개발경험 활용이 가능
- 한편, DAC 회원국과 국제개발기구도 신흥원조공여국과의 대화·협의를 통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신흥원조공여국의 특수 환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

□ DAC가 정립해 놓은 ODA 관련 지침의 발전 및 보완

5)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알제리, 남아공, 이집트,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5개국의 주도하에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2001년 7월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일종의 아프리카 부흥계획으로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발전, 아프리카의 세계경제에의 편입, 여성권익신장 등을 주요 목표로 함

6) TEAM-9(Techno-Economic Approach for Africa-India Movement)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기술 및 경제협력 제고를 목표로 인도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비양허적 성격의 기금

- DAC 회원국은 오랜 기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된 ODA 관련 지침을 정립해 놓은 상황
 - 특히, 약 10년전 작성된 'Shaping the 21st Century'는 'MDG'의 기원이 된 것으로 공여국과 수원국의 파트너십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
- DAC 비회원국인 신흥원조공여국도 이러한 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과거 수원국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을 기대

나. 우려되는 점

- ODA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위한 기존 ODA 회원국의 공동 노력을 저해
 - 경제규모가 작은 개도국은 신흥원조공여국이 개입하여 자금지원을 제안할 경우 비교적 적은 지원만으로도 ODA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기존 원조공여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예컨대, 태평양의 나우루공화국은 대만으로부터 상당한 ODA를 지원받았으나 정유선적이나 항공기 리스원리금 상환 등 단기적 지원에 집중됨으로써 나우루의 구조조정 이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 HIPC 국가의 채무상환능력(debt-service capacity) 회복을 저해
 -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채무구제 노력으로 상당수의 HIPC 국가가 채무부담에서 벗어남
 - HIPC 채무구제 프로그램을 졸업한 아프리카 국가는 수출액 대비 외채비중이 평균 6%에 불과
 - 그러나 HIPC 국가들이 신흥원조공여국의 등장으로 다시 외채문제에 빠지게 될 세 가지 위험이 존재
 - i) 회복된 채무상환능력을 이용하여 신흥원조공여국으로부터 민간금융, 수출금융, 비양허성차관 등을 도입하는 경우
 - ii) 타 공여국이 대규모 ODA 공여에 앞서 HIPC 국가의 정책개선이나 구조조정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신흥원조공여국이 무조건적인 ODA를 공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경우

- iii) 신흥원조공여국이 자국기업이나 공급자의 압력으로 원조사업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너무 무모하거나 비생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어 개발재원이 고갈되는 경우

□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과의 부조화

- 신흥원조공여국의 경우 많은 DAC 회원국이 초기에 그랬던 것과 같이 타이드 ODA를 통해 자국의 자원개발이나 수출진흥과 지나치게 연계하려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나칠 경우(특히 최빈국의 경우), 선진 공여국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감소를 위해 공동의 개발목표로 합의한 MDG 달성과 원조의 효과성 제고 노력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음

□ OECD 수출신용협약의 위배에 따른 불공정 경쟁 유발

- OECD 회원국은 타이드 차관의 경우, 병원, 학교, 재생에너지, 상하수도 등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신흥원조공여국은 OECD 비회원국이므로 이러한 협약의 제약을 받지 않음
- 이에 따라, OECD 비회원국인 신흥원조공여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에 어긋나게 타이드 차관을 운용할 경우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 보다 비교우위를 누리게 되어 불공정 경쟁 시비를 유발할 수 있음

5.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

가. OECD

- OECD는 최근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양 방향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먼저, OECD 회원국이면서 DAC 비회원국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OECD Member DAC Observers'라 명명하고 이들 국가의 DAC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 OECD회원국의 DAC가입 유도(Inreach strategy)

- 올해 10월 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DAC 회원국과 OECD member DAC observers 대표들 간의 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
- 매년 12월 OECD DAC의 중견관리자회의(SLM) 직전에 DAC 의장과 OECD member DAC observers 대표들 간의 비공식대화를 개최할 계획
- 한편, **OECD 비회원국인 신흥원조공여국들을 대상으로 수출신용협약을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출신용 및 원조에 의한 무역질서 왜곡을 막아 공정경쟁의 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함**
 - ⇒ 비회원국들의 참여 확대(Outreach strategy)
- OECD는 중국,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비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정기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 임시 Observer로 참여하도록 관련 당국과 접촉할 예정
- 또한, 이스라엘, 루마니아 등 기타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수출신용보증작업반회의와 같은 OECD의 수출신용 관련 작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

나. 세계은행 · IMF

- 세계은행과 IMF는 저소득국의 차입여력을 이용하려는 일부 신흥원조 공여국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간주하며 문제를 제기**
- 세계은행과 IMF는 그동안 고채무빈국의 채무구제 계획(HIPC Initiative)⁷⁾, 채무압박 수준에 따른 무상원조 배분제도(DSF)⁸⁾, 다자간 채무구제 계획(MDRI)⁹⁾ 등을 통해 저소득국가의 채무감당능력(debt sustainability)¹⁰⁾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7)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채무구제를 위해 1996년 9월에 최초로 도입된 채무구제 계획으로 그 이후 수혜대상국의 확대, 채무경감 폭 확대, 조기 지원, 채무경감과 빈곤퇴치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1999년 9월 한 차례 개정(Enhanced HIPC Initiative)되었음

- 보통 HIPC Initiative라 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Enhanced HIPC Initiative를 가리킴

8) IDA가 2005년 2월 제14차 자원보충회의에서 도입한 무상원조 배분제도로, 수원국의 상대적인 채무압박(debt distress) 정도에 따라 무상원조 배분비율(채원 배분액의 100%, 50%, 0% 등 세 가지)을 자동적으로 결정하여 무상원조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빈곤국들의 채무감당능력 배양을 지원하는 제도

- 수원국들을 채무압박 정도에 따라 세 그룹(high risk 국가, moderate risk 국가, low risk 국가)으로 분류하여 각 수원국 앞으로 배정된 재원의 일정비율(100%, 50%, 0%)을 무상원조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유상차관으로 제공

9) 2005년 4월 G-8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안되어 7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다자간 채무구제 계획(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으로 고채무빈국(HIPC)의 IDA, IMF, AfDF 등 다자간원조기구에 대한 채무를 완전 탕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며 IMF와 AfDF는 2006년 1월부터, IDA는 2006년 7월부터 동 계획을 시행하기로 함

10) Debt sustainability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수준의 부채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채무적정성)'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국이 자국의 수지균형에 비현실적인 대폭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서도 자국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continue serving its debts)'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감당능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함

- 반면, 최근 중국 등 일부 신흥원조공여국들은 채무감당능력이 개선된 저소득국의 차입여력을 이용하여 수출신용이나 원조차관을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국들이 다시 만성적인 채무과다 상황에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세계은행과 IMF는 개선된 저소득국의 차입여력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자금지원을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신흥원조공여국들을 소위 '무임승차자'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
- 나아가, 신흥원조공여국들의 무분별한 자금지원은 저소득 국가의 채무감당능력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전개
- 세계은행과 IMF는 2005년 2월 '채무압박 수준에 따른 무상원조 배분제도(DSF)' 도입시 무임승차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DA의 무상원조 수혜국이 채무감당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추가차입을 하게 되면 IDA의 무상원조 수혜자격을 즉시 정지하기로 합의함
- 세계은행은 무임승차자 문제에 대한 OECD와의 공동 대응을 위해 2006년 4월 수출신용보증작업반회의(ECG)에 참석하여 동 문제를 본 의제의 하나로 다루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
- 세계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MDRI가 시행되면서 늘어난 차입여력으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IMF와 함께 무임승차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6. 시사점

- 모범적인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해서는 국제원조사회에서의 역할 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가 기대됨
-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이룩한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해서는 후발개도국에 대한 개발경험의 전수를 기대

- 신흥원조공여국의 경우 수원국으로서의 경험과 역사적, 문화적인 동질성 등으로 인해 보다 생생한 개발경험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원조규모의 지속적 확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등을 통해 국제원조사회가 추구하는 공동목표 달성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
- 국제원조사회는 기존 원조공여국만으로는 MDG 달성 등 개발원조분야의 도전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흥원조공여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 이에 따라, 단기간에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모델과 경험은 수원국의 개발계획 수립과 원조공여국의 원조형태 결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 과거 유상차관을 받아 주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경제인프라 건설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모델은 유상원조를 활용한 경제개발의 성공사례로 활용 가능
- 수출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신흥원조공여국의 원조규범 준수를 유도하려는 국제원조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함**
 - 신흥원조공여국의 급부상은 공정경쟁과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원조사회의 규범 틀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
 - ODA 자금의 비생산적 사용, 국제무역질서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신흥원조공여국에게 국제사회의 원조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중국 등 신흥원조공여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OECD 비회원국인 신흥원조공여국을 수출신용협약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OECD의 노력(Outreach strategy)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
- 신흥원조공여국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HIPC 국가나 IDA 무상원조 수혜국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려워질 전망**
 - 중국, 인도 등 IV그룹에 속하는 신흥원조공여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수출신용 및 유상차관이 저소득국의 채무감당능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들은 이를 방지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중

- 이에 따라 HIPC 국가와 IDA 무상원조 적격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이 일정 부분 규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동 국가에 대한 수출신용이나 유상차관 제공이 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
- 개도국간 남남협력의 확대를 통해 국제원조사회의 다극화가 가능해 지고 장기적으로는 신흥원조공여국 중심의 정책협의도 가능할 전망
- 신흥원조공여국이 국제 원조사회에서 원조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꾸준히 추구해 나간다면,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남남협력 형태의 개도국간 개발협력으로 발전 가능
- 남남협력의 확대는 국제원조사회에서 ODA 공여주체의 다양화를 가능케 하여 개도국에게 협력 대상국의 선택 기회와 다양한 개발경험의 활용 기회를 폭 넓게 제공
- 나아가, 신흥원조공여국의 등장은 선진 원조공여국을 주축으로 하는 OECD DAC 중심의 국제원조사회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여 신흥원조공여국 중심의 협의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 자 료 : 1. OECD DAC, Will Emerging Donors Change the Fa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6.3
2. OECD, Outreach to Non-Member Economies, 2006.4
3. The World Bank,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pp.87~88, 2006.4
4. The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6, pp.87~99, 2006.6

작 성 : 오 용 근, oh_yongkeun@koreaexim.go.kr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1

제 57차 OECD DAC 통계회의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OECD DAC는 제57차 통계작업반회의(WP-STAT)를 개최하고 ODA통계의 집계방식 개선, 기술협력의 세분화, 통계작성지침 개정 등을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06. 6. 6 ~ 6. 7(2일간), 프랑스 파리
- 이번 회의에는 23개국 대표와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 참가국 :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제외한 20개 DAC 회원국과 한국, 헝가리, 체코 등 3개 DAC 비회원국이 참석
 - 국제기구 : EC, UN ECOSOC, UN AIDS 등

2. 주요 논의내용

- ODA통계의 집계방식 개선
 - OECD는 DAC통계(집계통계)¹¹⁾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이미 보고된 개별 사업의 건별통계(CRS통계)를 가공하여 DAC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기존의 보고양식을 모두 통합한 단일 보고양식(CRS++)을 제시
 - DAC 회원국 중 유럽 국가들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보고양식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ODA통계의 집계방식 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힘
- 향후 원조지출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상황
 - OECD는 최근 공여국의 효율적 원조재원 배분과 수원국의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2007-8년도 ODA지출계획(forward spending plans; 지역별·부문별 배분계획 포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11) DAC통계는 매년 원조공여국이 개도국 앞으로 제공한 공적 및 민간 자금의 흐름을 집계한 통계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기타공적자금(OOF), 민간자금(PF) 등을 모두 포함

-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국가들은 예산체제, 선거, 국내 사정 등으로 ODA 규모 및 지역별·부문별 배분계획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힘

□ 원조성과에 대한 측정양식

- OECD 사무국은 MDG 목표달성 및 파리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성과측정을 위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외무부, EC, 영국 DFID 등과 공동으로 원조성과측정양식(results template)을 마련함
 - 동 양식은 각 공여국의 특정 수원국에 대한 원조성과를 MDG 지표, 파리선언 지표, 부문별 성과, 부문별 예산 및 지원액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
- 사무국은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정책대화 시 공여국 각자의 양식이 아닌 공통된 성과측정양식을 활용해야 하며, 원조성과에 대한 측정 및 보고는 통계부문에서 수행되어야함을 강조함

□ 기술협력의 세분화

- 기술협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술협력의 타이드 현황을 밝히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기존에 보고된 기술협력사업들을 하위범주(sub-categories)로 세분화하여 기술협력으로의 분류가능 여부를 재검토함
 - 프로젝트/프로그램, 예산지원 및 기타 현금이전, 인적교류협력, 개도국을 위한 소규모 지식공유, 기타 등 5개 하위범주로 분류
- 회원국들은 기술협력의 세분화 안을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사무국은 동 안을 좀 더 발전시켜 올해 가을쯤에는 세분화 안을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임을 밝힘

□ 채무구제(debt relief)의 ODA 간주에 대한 논란

- 사무국은 DAC의 ODA통계수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EU-NGO 그룹의 비판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 EU-NGO 그룹은 나이지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을 ODA로 간주하여 네덜란드 등 EU국가들의 2005년 ODA실적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개도국의 빈곤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부채탕감, 공여국내 난민지원 등은 ODA통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함

- 회원국들은 ODA의 진정한 의미와 ODA의 산출 방법을 분명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NGO 그룹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ODA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함
- ODA차관의 양허성 수준 측정방식 개선 계획
 - 사무국은 ODA차관의 현행 양허성 수준 계산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 방안을 2006년 DAC의 SLM(중견관리자회의)에 제안할 계획임
 - 사무국은 2006년 SLM 회의 전까지 ODA 차관의 양허성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위해 차관 사업을 시행하는 회원국들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할인율과 증여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 새로 도입된 온라인 통계보고시스템(OECD.STAT) 소개
 - 사무국은 기존의 통계보고시스템인 IDS(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를 대체할 새로운 온라인 통계보고시스템(OECD.STAT)을 소개함
 - OECD.STAT 접속방법 :
http://www.oecd.org/document/33/0,2340,en_2649_34447_36661793_1_1_1_1,00.html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CRS통계와 DAC통계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통합보고양식(CRS++)이 완성되어 DAC 회원국은 점차 ODA 통계실적을 CRS++로 보고할 예정이므로 비회원국이지만 DAC통계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국가들도(우리나라 포함) 양 통계의 통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향후 중장기 원조배분계획 자료제출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임
 - DAC는 원조규모 확대 추세와 더불어 원조자금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원조배분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조공여국들은 원조지원계획 수립시 중장기적인 원조 배분계획 수립이 필요(지역별, 부문별 배분계획 포함)

- MDG 선언 및 파리선언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점검에 필요한 원조성과측정이 더욱 용이해 질 전망
 - DAC가 준비하고 있는 수원국별 원조성과측정을 위한 공통양식(results template)이 확정되면 MDG 선언 및 파리선언의 서명국들은 동 선언의 이행상황점검에 필요한 수원국별 원조성과측정이 훨씬 쉬워질 전망
- 기술협력 개념의 세분화 작업으로 기술협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
 - 기술협력의 세분화 작업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기술협력의 개념정의가 분명해 지고 기술협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져, 일본 등 차관 사업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원조공여국의 기술협력 활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ODA 확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ODA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
 - EU-NGO 그룹이 채무탕감의 ODA 계상을 강하게 비판하였듯이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OD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ODA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2

인도네시아 CGI Member의 원조 공약내용

1. 인니 원조공여국회의 개최

- 최근 제15차 인니 원조공여국(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 CGI) 회의¹²⁾가 개최되어 인니 경제사회개발정책, 지진피해 현황 및 대응, '06년도 원조공약 등이 논의됨
 - 일시 및 장소 : 2006. 6. 14(수), 인니 자카르타
- 동 회의에는 29개 CGI Member인 국제개발기구(세계은행, ADB 등)와 원조 공여국(우리나라 포함) 대표들이 참석
 - 참가국 : 일본,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스페인, 독일,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등 20여개 국가 대표가 참석
 - 국제기구 : 세계은행, IMF, ADB, IDB, UN, UNDP 등

2. '06년도 인니 재정자금 소요내역과 CGI Member의 원조 공약내용

가. '06년도 인니 재정자금 소요내역

- 인니 재무장관은 '06년도 재정적자와 차관상환금액을 감안할 때 **약 170억불**의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가 GDP의 1.3~1.5% 규모인 43억불~46억불 규모에 이르고 기존 차관 원리금 상환금액인 120억불 정도일 경우를 가정
- 인니 정부는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에서는 채권발행 등을 통해 123억불을 조달하고 해외에서는 45억불 내외의 추가 차입이 필요할 것으로 발표

12) CGI는 인니의 주요 양자간 및 다자간 채권자들이 인니의 최근 경제개발 수요에 대한 자금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country-level grouping)으로 작년에는 신규 차관으로 34억불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

인니정부의 2006년도 자금 소요 및 조달 내역

(단위 : 억불)

재정자금 소요		자금 조달	
재정적자	43 ~ 46	국내 조달	123
차관원리금 상환	124	해외조달	44 ~ 47 (39 ~ 42) 주)
계	167 ~ 170	계	167 ~ 170

주) CGI Member로부터의 조달 규모로 37억불은 Program Loan과 Project Loan으로, 2억불은 기술협력 Grant로 조달

나. CGI Member의 '06년도 원조 공약내용

- CGI 회원국은 '06년도 인니 예산지원을 위해 유상 39억불, 무상 15억불 등 총 54억불을 약정하였음
 - 이 중 39억불은 인니정부를 통한 국가예산으로 사용되며 15억불은 인니 국민에 직접 지출
 - 39억불 중 3대 Donor(세계은행, ADB, 일본)가 77%인 30억불을 지원
- 주요 CGI 회원별 지원약정 규모¹³⁾
 - 세계은행 : 9~10억불 신규 약정(Commitment)
 - ADB : 8~9억불 신규 약정 (Program Loan 및 Project loan)
 - 약 10억불 지출 : 3억불 Project Loan 및 6-7억불의 Program Loan
 - 일본 : 8.4억불 신규 약정, 7.8억불 지출 (차관 및 증여)
 - 우리나라 : 인니가 EDCF 주요 지원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중기계획에 따라 연간 1억불씩 향후 약 4억불을 지원 예정
 - 호주 : '06년도 ODA로 3.4억 호주달러 약정
 - 스페인 : '06년도 1.2억 유로 예산 배정

13) 각 CGI 회원국이 발표한 약정금액은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하야(유·무상 구분, 승인·지출 기준, 재난구호자금 포함 여부 등이 불명확) 정확한 국가별 비교가 어려움

- 프랑스 : '06년도 최소 약 7천6백만 유로 지출 예상
 - * 프랑스는 이미 AFD를 통하여 쓰나미 재건 자금으로 3억 유로의 양허성 차관 지원을 약속(실제 집행실적은 저조함)한바 있으며, 동 자금을 금번 족자 지진 재건자금으로 활용 의사 표명
- 독일 : '06년도 예산으로 총 6천6백만 유로 약정 (3천6백만 유로의 증여 및 3천만 유로의 유상차관)
- 스웨덴 : '06년도 ODA로 8백만불 지원 예상

3. CGI Member의 차관(Loan) 제의에 대한 인니정부 입장

- 한편, CGI Meeting 이후 인니 정부는 유상차관에 대한 선별적 수용 입장과 차관 수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짐
-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차관 수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채무를 가중 시킨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하여 유상차관에 대한 선별적 수용 움직임이 대두

가. 해외 차관의 선별적 수용

-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장관(Bappenas)은 현재 미사용 예산이 많은 상황이므로 CGI Member가 제안한 해외 차관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
- 정부의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미미하여 예산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신규 차관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예산집행 실적 저조는 담당 관료가 부정부패에의 연루 우려로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소극적인데 기인 → 정부의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피해가기 위한 관료주의의 발로라는 시각이 유력
- 인니정부가 도입할 차관규모는 국회의 '06년 하반기 수정예산(Mid-year budget revision) 심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함
 - 인니 역사상 국회의 해외 차관규모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첫 사례라고 함

나. 해외 차관 수용에 대한 적극적 지지

- 한편, 인니 부통령(Jusuf Kalla)은 금년도 예산 수요를 충당할 다른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므로 CGI 회원국이 제안한 차관 도입이 불가피함을 주장

- 국내 조달 방안인 채권 발행 및 민영화 프로그램에 따른 재원조달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으며, 미 지출 승인 차관의 재조정(Reallocation) 방안 또한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음
 - 대부분의 차관이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되어 있거나, 해당 프로젝트에 수년간에 걸쳐 지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
- 정부는 예산 충당을 위해 민영화 등과 같은 국내 재원조달을 모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만한 국가자산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현재 반민영화 로비 등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
 -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계획은 국회 및 노조 등의 반발로 실패로 끝나는 경우 종종 발생
- 채권 발행을 통한 국내조달 또한 대안이 아닌바, 해외 차입에 비해 금리 및 상환기간 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매우 높음
 - 인니 국가채권은 통상 금리 12%, 만기 10년인데 반해 외국의 양허성 차관 금리는 통상 2~3%이며 상환기간은 30~40년에 달함
- 경제조정장관(Boediono)도 해외차관 도입이 인니 부채구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동 차관이 주로 사회복지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고 있으므로 인니 발전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
 - 차입규모와 기일도래 상환금액 등을 고려할 때 외채의 순증은 없으며, 외환보유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차입 여건이 양호함
 - '06년도에 신규 채무가 발생하여도 인니 GDP 대비 부채비율은 작년도 48%에서 금년도 4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작 성 : 인니주재원 홍 성 훈, hongs@koreaexim.go.kr

정 리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3

국제원조에 대한 캐나다 CCIC의 비판적 분석

- 캐나다 국제협력위원회(CCIC)¹⁴)는 올해 6월 '2006년 원조의 현실(2006 Reality of Aid)'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DAC 회원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현실을 지적
 - 9·11 테러사건 이후 공적개발원조는 개도국의 빈곤퇴치 보다는 선진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주장
 - 최근 선진 원조공여국의 원조동향을 보면 ODA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미흡한 점이 많음을 비판
- 최근 공적개발원조가 개도국 빈곤층의 인권과 복리가 아닌 공여국 자신의 안보이익 증진에 사용되고 있어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원조의 순수성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고 주장함
 - 먼저, 일부 원조공여국들은 공적개발원조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개발원조를 자국의 안보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호주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테러프로그램을 원조에 포함시키고 있음
 -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군사적 안보 지출을 ODA에 포함하기 위해 ODA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였음
 - 또한, 분쟁중인 개도국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은 인도주의적 동기가 아닌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이라는 명목 하에 부유한 선진국의 안보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음
 - 9·11 테러사건 이후 타 분쟁국에서의 시급한 평화유지활동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군사작전 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음

14) CCIC (The Canadian Counci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해 활동 중인 캐나다 시민단체들(약 100여개)의 협의체로 캐나다의 무상원조 실시기관인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지구촌 빈곤퇴치, 사회정의 증진, 인권 신장 등을 목표로 함

- 테러와의 전쟁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에서 억압적인 치안부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소외된 빈곤층의 인권신장에 악영향을 줌

□ 한편, ODA의 양적인 측면을 보면 ODA 규모는 군비지출 규모에 비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의 원조규모 확대도 대부분 채무구제에 의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음

○ 2000년 이후 세계 군비지출은 크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 하였으나, ODA 증가분은 군사비용 증가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2000년 이후의 세계 군비지출 증가분이 ODA로 사용되었다면 원조공여국들이 UN의 ODA 목표(국민소득 대비 0.7%)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임
- 특히, 미국의 ODA는 2004년 군비지출액의 4% 수준에 불과하고, 영국의 ODA는 17%에 불과

○ 2005년 ODA 규모는 전년대비 31%(269억 달러) 증가하여 1,065억 달러에 달했으나, 증가분의 85%(229억 달러)는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채무 구제에 따른 것

- 채무구제에 의한 ODA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2005년 ODA 규모의 실제 증가율은 31%가 아닌 9%에 불과
- 덴마크, 독일 등 일부 DAC 회원국들의 2005년 ODA 규모는 채무구제 수치를 제외할 경우 2004년 규모보다도 낮은 상황
- 채무구제는 장부상의 외채가 탕감되는 것인 만큼 공여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원조 자금 유입 등의 효과가 없어 수원국의 빈곤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원조공여국들은 현재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경주하고 있지 않음

- MDG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500억 달러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원부족분은 2015년에 75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더욱이, ODA의 질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ODA의 배분지역, 타이드 수준, ODA의 용도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음

○ 지속적인 ODA 재원투입이 절실한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원조는 실제로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2000년 전체 ODA의 25%를 차지하였고 2004년에는 33%로 늘어났다고는 하나, 사실상 33% 수준은 과거 1990년의 수준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것의 절반은 채무구제에 의한 것
 - DAC가 발표하는 타이드 수준(tying status)은 1990년의 41%에서 2004년에 9%로 크게 낮아졌다고는 하나, 원조공여국에서의 구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기술협력과 식량원조가 포함된다면 타이드 수준은 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더욱이, 원조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타이드 수준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타이드 수준은 7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수원국의 주인의식(local ownership)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양자간 원조는 감소하고 있음
 - 수원국 내부 개발(in-country development)과는 무관한 ODA¹⁵⁾를 제외한다면 2004년 기준 양자간 원조의 32%만이 수원국의 자체 개발전략 수행에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는 2000년의 39% 수준에서 감소한 것임
 - 즉, 개발사업 추진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자는 기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캐나다 CCIC는 이상과 같은 ODA의 실상을 지적한 후, 원조공여국들이 자국의 안보이익 보다는 개도국 빈곤해소에 집중하여 원조의 순수성을 보전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선진 원조공여국들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군사적 활동을 ODA에 포함시켜 자국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려 하지 말고, 저소득국의 빈곤해소와 인권신장에 집중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순수성을 보전해야 함을 주장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15) 공여국 주도의 기술협력, 공여국에서의 난민구제, 개도국 유학생 지원, 긴급구호비용, 행정비용 등

【자료 1】

세계은행 및 OECD의 2006년도 국가분류 현황

1.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 2006년 7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5년 1인당 GNI를 반영하여 국가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2006년도 국가분류 현황을 발표
 - 동 분류는 세계은행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Operational lending categories)로서 ‘분석목적의 그룹분류’(Analytical classifications)¹⁶⁾와는 구분됨
 - 세계은행은 변경된 국가분류 기준을 2006년 7월 1일부터 유·무상원조의 지원조건 결정에 적용키로 함

세계은행의 국가분류기준 변경내용

(단위 : USD)

카테고리	지원조건	2005년	2006년
		2004년 1인당 GNI 기준	2005년 1인당 GNI 기준
I	Civil Works Preference ^{주1)}	825이하	875이하
II	IDA Eligibility & 20-year IBRD Terms ^{주2)}	826~1,575	876~1,675
III	17-year IBRD Terms	1,576~3,255	1,676~3,465
IV	15-year IBRD Terms	3,256~5,685	3,466~6,055
V	IBRD Graduation	5,685 초과	6,055 초과

- 주 : 1.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수행되는 토목공사(civil works)의 입찰자 평가에 있어 국내계약자(local contractor)가 토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적격계약자에게 특혜(preference)를 줄 수 있음
 2. IDA의 유·무상 원조와 IBRD의 20년 만기 변동금리차관을 받을 수 있음

- 2006년도 국가분류기준 변경으로 소속 카테고리가 바뀐 나라는 총 9개국
 ⇒ 세계은행의 전체 국가분류 현황은 붙임 참조

16) 세계은행은 분석목적의 위해 전세계 국가들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LICs): 2005년 1인당 GNI USD875 이하],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LMICs): USD876~USD3,465],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UMICs): USD3,466~USD10,725],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ies(HICs): USD10,725 초과]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용 중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변경내역

국 가	변경전	변경후	비고
니카라과, 레소토, 몰도바, 카메룬, 콩고인민공화국	I	II	5개국
모로코, 중국	II	III	2개국
루마니아	III	IV	1개국
라트비아	IV	V	1개국

2. OECD의 국가분류

- OECD는 2005년 7월 11일 ‘공적수출신용협약’ 제11조 a)항 및 제33조 a)항에 의거, 상기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근거로 2006년도 국가분류(Country classification)를 발표
 - 새로 발표된 OECD 국가분류는 올해 7월 24일부터 적용됨
- OECD의 국가분류는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원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속성 원조(Tied aid)의 수혜 적격여부 판정과 수출신용의 지원조건(최장상환기간) 결정에 사용됨
 - 구속성 원조 수혜 적격성 판정을 위한 국가분류
 - 적격국가 : 세계은행으로부터 17년 만기조건의 차관을 수혜받을 수 있는 국가 (즉, 세계은행 카테고리 I, II, III에 속하는 국가) → 현재 114개국
 - 부적격국가 : 그 이외의 국가 → 현재 95개국
 - 수출신용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
 - OECD 카테고리 I : 세계은행 카테고리 V에 속하는 국가(IBRD 졸업국)로 최장상환기간은 5년 → 현재 74개국
 - OECD 카테고리 II : 세계은행 카테고리 V 이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국가로 최장상환기간은 10년 → 현재 135개국

세계은행 및 OECD의 국가분류체계 비교

세계은행		OECD	
1인당 GNI (USD)	카테고리	타이드 원조	카테고리
875이하	I	적격	II
876~1,675	II		
1,676~3,465	III		
3,466~6,055	IV	부적격	I
6,055 초과	V		

주) OECD는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특정 국가의 세계은행 카테고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카테고리를 즉시 반영하지 않고 변경된 카테고리가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에만 반영함

- 단, 벨로루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Soft Ban 대상국가는 1인당 GNI가 3년 연속 타이드 원조 수혜 적격기준(세계은행 카테고리 III)을 초과한다면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2006년도 OECD의 국가분류 결과,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신규 편입된 나라는 3개국이며,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국가는 2개국임
- 적도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3개국은 2년 연속 세계은행 카테고리 IV로 분류되어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러시아는 2년 연속, 루마니아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카테고리 IV로 분류되었으므로 앞으로 각각 1년, 2년 동안 카테고리 IV를 유지할 경우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그러나, Soft Ban에서 벗어나더라도 세계은행 카테고리 IV를 유지하는 동안은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에 해당

붙임 : 세계은행의 2006년도 국가분류 현황

자 료 : OECD, 'Country Classification 2006'[TD/PG(2006)20], 2006.7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붙임)

세계은행의 2006년도 국가분류 현황

카테고리	해당국가 (국가수)
I	가나,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이지리아, 네팔 , 니제르 , 동티모르 , 라오스 , 라이베리아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넌 , 베트남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부탄 , 사우토메프린시페 , 세네갈 , 소말리아 , 솔로몬군도 , 수단 , 시에라리온 , 아이티 , 아프카니스탄 , 에리트리아 , 예멘 , 우간다 , 우즈베키스탄 , 이디오피아 , 인도 , 잠비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짐바브웨 , 차드 , 캄보디아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 키르기즈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토고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53개국)
II	가이아나, 그루지야 , 니카라과* , 레소토* , 몰도바* , 바누아투 , 볼리비아 , 스리랑카 , 시리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앙골라 , 온두라스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집트 , 인도네시아 , 지부티 , 카메룬* , 콩고인민공화국* , 키리바시 , 투르크메니스탄 , 파라과이 , 필리핀 (24개국)
III	과테말라 , 까보베르데 , 나미비아 , 도미니카공화국 , 마셜군도 , 마이크로네시아연방 , 마케도니아 , 모로코* , 몰디브 , 벨로루시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브라질 , 사모아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수리남 , 스와질랜드 , 알바니아 , 알제리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요르단 , 이란 , 자메이카 , 중국* , 카자흐스탄 , 콜롬비아 , 태국 , 통가 , 튀니지 , 페루 , 피지 (32개국)
IV	가봉 , 그레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러시아연방 , 루마니아* , 레바논 , 리비아 , 말레이시아 , 모리셔스 , 베네주엘라 , 벨리즈 , 보츠와나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적도기니 , 칠레 , 코스타리카 , 터키 , 파나마 (22개국)
V	대한민국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멕시코 , 세이셸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슬로바키아 , 앤티가바부다 , 에스토니아 , 크로아티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팔라우 , 폴란드 , 헝가리 (13개국)

주 : **■** 표시는 최빈국(LDC) (총 49개국)이고, * 표시는 2006년중 카테고리가 1단계 상향조정된 국가 (총 9개국)

목차보기

【자료 2】

프랑스 AFD의 2005년 업무실적

1. 프랑스 AFD의 개요

- 프랑스의 ODA는 재경산업부(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와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원조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분담
 - 양자간원조의 경우, 재경산업부는 경제적·상업적 목적의 유·무상원조를, 외무부는 외교적 목적의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 AFD)은 재경산업부의 예산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프랑스 양자간원조의 중추적 실행기관
- 프랑스개발청(AFD)은 프랑스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의 대표적 실시 기관으로서 정부기관이 아닌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특수금융기관
 - AFD는 정부 원조기금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원조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음
 - AFD는 유상차관, 무상증여, 보증, 출자 등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적인 원조 기관이나 유상차관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AFD의 재원은 시장에서의 차입금(정부보증부), 정부 차입금, 정부위탁업무를 위한 공공기금 등으로 조달하나, 시장에서의 차입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

2. AFD의 2005년 업무실적

- AFD의 2005년 승인실적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22억 유로를 기록(집행실적은 8.5억 유로로 전년대비 23% 증가)
 - 개도국 앞 16.8억 유로와 프랑스해외영토 앞 5.4억 유로로 구성
 - 원조형태별로 보면 차관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무상증여, 예산지원 등이 뒤를 이음

AFD의 지원형태별 승인실적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2004년		200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차관	1,202.5	80.1%	1,783.7	80.5%
증여	173.7	11.6%	269.7	12.2%
보증	25.7	1.7%	53.6	2.4%
출자	18.3	1.2%	33.2	1.5%
예산지원	80.7	5.4%	75.5	3.4%
합 계	1,500.9	100.0%	2,215.7	100.0%

- 차관의 경우 지원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시아로 전년대비 392%가 증가한 488.5백만 유로를 기록

- 중국(180), 베트남(119), 스리랑카(78), 라오스(47), 태국(40), 인도네시아(20) 순

AFD의 지역별 승인실적(2005년)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차관	증여	보증	출자	예산지원	합 계
서부 아프리카	96.5	124.5	4.5	0.5	23.5	249.6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	257.9	71.6	12.2	9.5	32.0	383.1
북부 아프리카 및 중동	357.6	22.3		2.5		382.4
아시아	488.5	26.7	6.5			521.7
캐리비안·인도양·남태평양	9.9	14.7		4.2		28.7
기 타	54.7	9.9	12.0	16.6	20.0	113.2
소 계	1,265.1	269.7	35.2	33.2	75.5	1,678.7
프랑스자치령	518.6	-	18.4	-	-	537.0
합 계	1,783.7	269.7	53.6	33.2	75.5	2,215.7

- 전통적인 지원분야는 도심개발, 농촌개발, 산업, 금융시스템, 환경 등
- 2005년부터는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도 지원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3. 업무실적의 주요 특징

□ 아프리카는 주요 지원대상지역으로서 지원 집중도는 여전히 높음

- 아프리카는 아시아(30%), 중동(7%)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연간 승인액의 54%를 차지

-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무상원조의 2/3이상이 집중

-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정부 재정자금의 효과성을 극대화
 - AFD는 소규모 재정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자금을 대거 조달함으로써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민간자금이 참여하도록 유도함 → 레버리지 효과
 - 정부 지원금 6.4억 유로를 활용하여 3배 이상인 22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제공

- AFD는 '신흥국가에 대한 진출전략'(emerging countries strategy)을 수립하여 시험 중
 - 동 전략은 신흥국가에서의 국제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전염병 퇴치지원 등의 노력을 말함
 - 중국에서는 운송과 주택공급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1.8억 유로의 사업을 추진
 - 터키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중소기업의 사회환경적 노력 지원을 위해 7천만 유로의 차관한도를 제공
 - 태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최초로 4천만 유로의 금융 패키지를 승인

- 지방정부 등에 대한 금융지원(non-sovereign financing) 규모를 대폭 확대
 - 개도국의 탈중심화 추세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민간부문 금융에 특화된, AFD의 자회사 Proparco는 2005년 승인액이 전년대비 70% 증가한 370백만 유로를 기록
 - 지방정부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는 개도국 내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 형성에 기여

자 료 : AFD Annual Report 2005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